#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·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03 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김영배・이기헌・권향엽

이학영 · 문금주 · 이훈기

김태년 · 김태선 · 한정애

윤후덕 · 서미화 의원

(119]

# 제안이유

한국전쟁 전·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, 이에 따른 사회적후유증이 심각함.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,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·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,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 또한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 ·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

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 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(안 제7조).
- 다.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,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야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라.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음(안 제11조).
- 마.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(안 제12조).
- 바.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 족의 신체적·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

하여야 하며,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- 사.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·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,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7조 및 제18조).
- 아.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·의료지원금·생활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(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).
- 자.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,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(안 제23조 및 제24조).

#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 ·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 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 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고문"이란 공무원·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사인이 공무원의 교사·동의·묵인 아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른 형집행 및 그 밖의 제재는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  - 가. 자기나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
    - 나. 자기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 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
    - 다. 자기나 제3자를 협박 또는 강요할 목적
    - 라.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
  - 2. "고문피해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

- 조에 따른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가.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
- 나.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(傷痍)를 입은 사람
- 다. 고문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 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- 라. 그 밖에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
- 제3조(유족의 범위) ① 이 법에서 "유족"이란 「민법」에 의한 고문피해자의 상속인(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말한다. 다만,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행방불명된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구제·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제4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절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, 향후 고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불이익처우 금지) ① 누구든지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.
  - ②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은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.

#### 제2장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

- 제7조(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) ①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 - 2. 고문방지와 고문피해자 명예회복, 구제·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부 권고안 작성
  - 3. 고문에 관한 제보의 접수 및 처리
  - 4.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 결정
  - 5. 고문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
  - 6.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심의 및 결정
  - 7.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한 상담·치료프로그램, 고문피해 자 전문의료센터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
  - 8. 고문피해자 보상ㆍ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
  - 9.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국내ㆍ국제ㆍ외국기

구와의 협력

- 10. 그 밖에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보상·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,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.
  -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의 직무를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임위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사무위원과 상임조사위원 각 1 명씩을 둔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고문방지 교육) 위원회는 체포·구금·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고문피해 실태조사)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- ② 보고서는 고문피해의 실태와 고문피해자 구제현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.
- 1. 고문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
- 2. 고문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
- 3. 법령 · 제도 · 정책 ·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관련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 표할 수 없다.
- ⑤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은 해당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실태보고서로 작성하여 연 1회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고문피해자 결정 신청) ①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

- 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 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고문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고문피해자 결정)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,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,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문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 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은 이 법에

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진다.

- 제13조(해외신고처 설치 및 공고)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에 따른 재외공관(이하 이조에서 "재외공관"이라 한다)에 제11조에 따른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신고처(이하 이조에서 "신고처"라 한다)의 설치를 요청한다.
  -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의 설치 여부와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신고처 설치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처의 설치 및 공고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 분류) ① 위원회는 보상·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고문피해자의 장해등급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가 장해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분류 및 재분류와 신체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긴급구제)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고문 피해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, 이를 방치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

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긴급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. 의료, 급식, 의복 등의 제공
- 2.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
- 3. 그 밖에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, 명예의 보호,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

- 제16조(상담 및 치료프로그램) ①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·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「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전문의료센터의 지정)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고문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·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

- 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고문피해자 전문의 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의료치유센터의 지정 기준·방법·절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법률지원) ①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, 소송대리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보상금)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.
  - 1.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: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·월실수 입액(月實收入額)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(單割引法)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
  - 2.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: 다음 각 목의 금

액을 합한 금액

- 가.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·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
- 나.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,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
- ②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,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(公信力) 있는 증명에 의하고,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,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의료지원금) ①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

또는 보장구(補裝具)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·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.
- ③ 고문으로 상이를 입은 고문피해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생활지원금) ① 국가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보상금등의 지급 및 지원의 이용 신청) ① 고문피해자 또는 그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·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(이하 "보상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한다.
  - ②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6조의 상담·치료프로그램, 제17조의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 및 제18조의 법률지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심의와 결정)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 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.
- 제24조(결정서 송달)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5조(재심의) ①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24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3조 중 "90일" 및 "120일"은 각각 "60일"로 본 다.
- 제26조(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)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 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
- 제28조(조세 면제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29조(결정전치주의)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관한 소송은 보상 ·지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보상금등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(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보상·지원 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을 지났을 때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(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)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제30조(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) ① 이 법은 고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문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31조(보상·지원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 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(環收)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
  - 2. 잘못 보상된 경우
  - 3. 고문피해와 관련하여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

된 경우

- 4. 고문피해와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.
- 제32조(시효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는 제24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

### 제4장 보칙

- 제33조(비밀누설의 금지) 고문피해자 보상·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4조(사실조사 및 협조의무)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·지원을 위하여 관련자,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,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## 제5장 벌칙

- 제36조(벌칙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·지원을 제공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  - ③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